사회관계장관회의	
회 차	2021 - 22 (3호)
안건유형	보고(서면)

「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」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(안)

2021. 12. 15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1

Ⅱ. 주요 내용 2

Ⅲ. 2021년 추진현황 점검 결과 3

Ⅳ. 단계별 주요 실적 4

Ⅴ. 평가 및 향후계획 11

【붙임】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

Ⅰ. 「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」 추진배경

□ **(수립 배경)**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**문제점 누적**, 기존 체계의 한계 노출 → **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여건**을 반영한 **정책 대전환** 필요

※ 폐비닐 수거중단('18년), 전국 120만톤 불법폐기물('19년), 재활용시장 침체('20)

① **(발생)** 경제성장, 소비패턴 변화 등 **폐기물 발생 지속 증가**

*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5년간 약 55% 증가('13~'18)

② **(배출) 분리배출과 재활용 현장이 유리**되어, 다량의 이물질 혼입

* 지자체 공공 선별장에 반입된 분리배출 폐기물 중 약 40%는 재활용 불가

③ **(수거) 민간업체 중심 수거**로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**수거중단 우려**

④ **(재활용)** 통계상 재활용률은 높으나 **영세업체, 저급 위주 재활용**

⑤ **(처리)** 처리시설 **신·증설 어려움**(NIMBY), 지역간 **장거리 이동처리 빈번***

* 생활폐기물 약 20%, 사업장폐기물 약 35%가 타 시·도 처리

□ **(수립 경과)** 전문가·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**단계별 개선 과제 도출**('19.11~'20.8월), **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·확정**('20.9월)

○ **(과제도출)** 폐기물 관련 내·외부 의견수렴, 국회 토론회, 유관기관 워크숍 등을 통해 **분야별 개선 필요과제** 발굴('19.11~'20.3)

* 국회 정책 토론회('19.11), 자원순환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('19.12) 등

○ **(정책포럼)** 정부·지자체·전문가·기업·시민단체가 참여하는 **자원순환 정책포럼**(4개분과, 80여명 참여) 구성, **대전환 계획 구체화**('20.4~8월)

○ **(의견수렴)** 분야별 **이해관계자 간담회**를 통해 현장의견 반영

* 시민사회(4.9), 폐기물 협회·단체(7.7), 17개 시·도(7.22, 9.14), 산업계(8.7) 등 간담회

Ⅱ. 주요 내용(요약)

1 비전 및 목표

비전	자원순환 대전환을 통한 '녹색 전환' 실현
목표	■ **경제성장은 이루면서 폐기물은 늘지 않는 생산·소비 구조** * '30년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(폐기물발생량/GDP) 20% 감축 ■ **국민이 안심하는 공공 중심의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** * '24년까지 재활용폐기물 공공 책임 수거 전환, 수거중단 원천 예방 ■ **고부가가치 순환경제 활성화로 재활용산업 육성** * '30년 플라스틱 용기 등에 재생원료 30% 사용 달성 ■ **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주민 상생 강화** * '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(수도권 지역 '26년부터 제로화)

2 단계별 핵심과제

□ 폐기물 **발생부터 처리까지** 전 과정 관리체계 강화

○ **(발 생)** 폐기물 사후관리 ⇒ **생산·유통단계**부터 폐기물 **사전 예방**

- ①생산단계 폐기물 발생 억제, ②유통포장재 감축, ③친환경 소비 촉진

○ **(배출·수거)** 수익성에 좌우되는 민간 수거 ⇒ 안정적 **공공 책임수거**

- ①폐기물 특성에 맞는 분리배출·수거체계 개선, ②수거 안정화, ③단독주택·농어촌 등 취약지역 수거 개선

○ **(선별·재활용)** 저급 재활용 ⇒ **고품질 재활용**

- ①선별시설 확충 및 선별품질 개선, ②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 등

○ **(처 리)** 지역간 이동으로 비용·갈등 ⇒ **발생지 중심 친환경적 처리**

- ①발생지 책임원칙 확립, ②직매립 금지, ③환경/주민친화형 처리시설 구축

Ⅲ. 2021년 추진현황 점검 결과

□ **(점검 대상)** 「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」 상 **29개 주요 과제**

○ **(평가 기준)** ❶달성 (이행 완료), ❷정상추진(이행기한 미경과-추진 중), ❸보완필요 (이행기한 경과-추진 중)의 3단계로 구분

□ **(점검 결과)** 전체 과제 중 **10개(34%) 달성, 그 밖의 과제는 정상 추진**(66%) 중

분류	개수	주요 과제
계 (100%)	**29개**	-
달성 **(34%)**	10개	■ 제2차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계획('21~'23) 수립('21.2) 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법제화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, '21.7.6) ■ 폐기물 수입금지 제한 로드맵 마련('21.1) ■ 품목별 요일제 등 분리배출 지침 개정·시행('20.8.24)
정상추진 **(66%)**	19개	■ 사업장폐기물 감량목표 등 관리 강화('22) ■ 공공책임수거 시행('22~'24) ■ 생활폐기물 종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('21~'22) ■ 포장재 사전 평가 및 신고제 도입('22~'24)
보완필요 **(0%)**	0개	-

○ 다만, 정상추진 과제 중 일부는 이행 완료를 위한 **법령개정 및 예산 확보**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**상황 관리** 필요

Ⅳ. 단계별 주요 실적

1 발생 단계

□ 제조·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 억제

○ **(제품)** 자동차 부품, PET용기 등 판매량이 많은 **주요 제품군에 대한 순환이용성을 평가**, 25개 제품에 대해 **재질·구조 개선** 권고('20~'21년)

- 개선사례 중심으로 **포장재 재질·구조 설계 가이드라인** 마련('21.9)

※ (평가 제품수, 누적) '18년 126개 → '19년 227개 → '20년 252개 → '21년 328개

○ **(사업장)** 중소·중견 기업 대상 폐기물 **감량 및 재활용 설비 설치 지원**('21년, 33개소 22억원)

※ 감량 설비 지원 확대를 위해 '22년 예산 증액(50개소, 50억원) 편성

< 폐기물 감량·재활용 설비 지원 사례 >

슬러지 탈수·건조시설	폐합성수지 분리선별 시설	폐절삭유 재생설비
		

□ 재포장 및 과대포장 방지

○ **(재포장 금지)**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**재포장 금지 시행**('21.1), 제도 안착을 위해 주요 **사례별 가이드라인 배포**('21.4)

- 설·추석 명절 전후 **대형 유통매장** 중심으로 **집중점검**(환경부-지자체)

※ '21년 설/추석연휴 집중 점검기간 동안 과대포장 103/74건 적발

< 재포장 개선 주요 사례 >

개선 전	개선 후	개선사항
		합성수지 포장 → 종이 띠지
		합성수지 포장 → 투컵제품 (절취선 연결)

○ **(수송포장 기준) 택배 포장**에 대한 **과대포장**(공간비율·횟수) **기준*** **신설**을 위한 자원재활용법령 개정(~'21.12)

* 포장공간비율 50% 이내 / 포장횟수 1차 이내

- 합성수지 아이스팩, 완충재 등 **포장 부자재 관리 근거** 마련('21.4.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)

□ 1회용품 사용 억제

○ **(공공기관 실천)** 청사 및 회의·행사에서 1회용품, 플라스틱 감량을 위해 **'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**(총리 훈령)*' **제정**·시행('21.7)

* (적용범위)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, 학교, 지방공사·공단 등 3만여개 기관

○ **(1회용컵 회수·재활용) 컵 보증금제*** 도입을 위한 **법적 근거 마련**('20.6) 및 **보증금 관리센터** 설립('21.6) * '22.6월 시행

* 보증금을 포함하여 음료를 판매,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지급하고, 회수된 컵은 재활용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제도

< 1회용컵 보증금제 운영절차 >



①표준용기 사용 → ②판매점·무인회수기 반납 → ③보증금관리센터 → 보증금 지급

□ 다회용 컵·용기 사용 활성화

○ **(음식 배달용기)** 배달앱·음식점·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음식점, 장례식장 등 **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** 시범사업* 추진('21~)

* ①환경부-경기도 협업('21.7~) : 화성 동탄 지역 60여개 음식점 참여
②환경부-서울시-배달앱(요기요) 협업('21.10~) : 강남구 일대 음식점(60여개) 참여
③환경부-충남도-자활센터 협업('21.1~) : 공공의료원 장례식장(4개소) 다회용기 사용

< 다회용컵·용기 사용 자발적 협약 >

			
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 업무협약	다회용 음식용기 사용 업무협약	배달앱(요기요) 다회용기 협업	도립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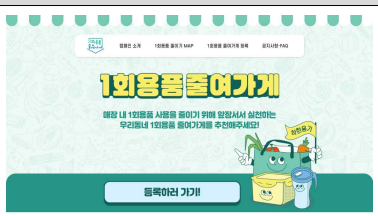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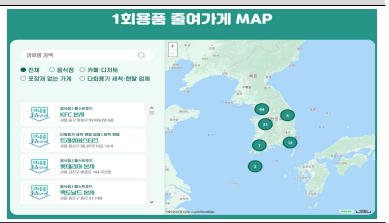
○ **(다회용컵) 다회용컵으로 음료를 판매**하고 반환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**1회용컵 없는 매장** 시범사업* 추진('21.7~)

* ①1회용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 시범사업(4개 매장, '21.7월~), ②세종청사(35개 기관, 1.2만명 근무)내 1회용컵 없는 카페 만들기(19개 매장) 협의('22.1월 시행 예정)

○ **(화장품 다회용기)** 소비자가 **화장품(샴푸, 린스 등 4종)**을 다회용기에 직접 담아 구매하는 **'조제관리사* 없는 매장'** 시범운영('21~'23, 7개소)

* 現「화장품법」상 조제관리사가 직접 또는 안내에 따라 소분 가능

○ **(착한소비 촉진)** 소비자가 ①다회용기 배달 음식점, ②포장재 없는 점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**'1회용품 줄여가게 지도'** 구축(400여개 등록)

캠페인 포스터	캠페인 홈페이지	1회용품 줄여가게 지도
		

2 배출 · 수거 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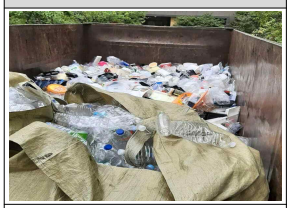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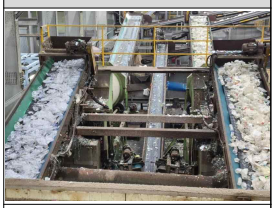
□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분리배출 체계 개선

○ **(투명 PET병 별도배출) 전국 공동주택**(1.7만개 단지) 투명 PET병 분리배출('20.12~) → **단독주택으로 확대**('21.12.25)

- ①생수·음료·유통업계 홍보 협약('20.12), ②투명페트병 전용 수거 마대자루(8.6만장) 및 안내문(10만장) 배포, ③수거업체 간담회('21.1)

※ 이종재질 플라스틱, 유색 페트병 혼입시 고품질 재활용이 어려워 일본·대만 등에서 연간 7.5만톤의 페트 재생원료 및 폐페트병 수입('20년)

< 투명페트병 별도관리 단계별 상황진단('21.10월 기준) >

별도 배출	→	별도 수거	→	별도 보관·선별	→	별도 재활용
						
공동주택 분리배출 정착 중 (자원관리도우미 9천명)		운반비 증가로 인한 일부 수거업체의 혼합수거 확인, 지자체를 통한 계도		154개 선별업체중 47개 별도시설 구축· (시장점유율 59%)		29개 재활용업체 중 12개 별도관리 시설 구축· (시장점유율 78%)

○ **(종이팩 분리배출)** 일반종이팩·멸균팩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**경기·세종 공동주택(6만 가구) 분리배출** 시범사업 실시('21.11~)

※ 종이팩은 일본 등지에서 주로 재생화장지 원료로 수입되나('20년 9.6만톤), 국내에서는 파지와 혼합 배출되어 잔재물로 처리('20년 재활용률 15.8%)

○ **(분리배출 안내)** 투명 PET병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**자원관리도우미 운영**('20~'21년, 총 1.9만명 배치)

○ **(분리배출 표시개선)** 플라스틱과 타 재질이 **도포·첩합되어 재활용이 안되는 경우**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**별도 표시(♲) 신설**('22.1 시행)

※ 신제품은 '22.1.1.부터 적용, 기존 제품은 '23.12.31.까지 기존 표시 허용

< 도포·첩합표시(⁄) 대상 예시 >

			
종이팩+분리 불가능한 플라스틱 마개	페트병+분리 불가능한 금속스프링 펌프	합성수지+ 탄산칼슘/ 생분해성수지 혼합	합성수지+분리불가능한 금속 잡자재 부착

□ 공공이 책임지는 안정적 수거체계 구축

○ **(수거 안정화)** 재활용가능자원(폐지·고철 등)의 가격 변동시 공동주택-수거업체간 계약단가를 조정하는 **'수거단가 연동제'** 시행 지자체 독려

* 수거안정화율 : 공공수거 또는 가격연동제를 적용중인 공동주택의 비율 92%('21.10)

○ **(책임 수거)** 재활용가능자원을 **지자체가 직접 수거**(또는 대행계약)하는 **공공수거 법제화** 추진('21.4,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)

○ **(취약지역 수거체계 개선)** 분리배출 취약지역(농어촌, 단독주택 등)에 상설 **거점수거시설('재활용 동네마당') 지속 설치**('20~'21, 438개소)

<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례 >

설치 전	설치 후	
		

○ **(미래폐자원 수거·회수)** 반납된 전기차 폐배터리의 보관, 성능평가·민간 매각을 위한 **'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' 구축**('21.8, 4개소)

<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>

구 분	수도권(시흥시)	충청권(홍성군)	호남권(정읍시)	영남권(달서구)
수용량	1,097개	636개	1,320개	400개
조감도				

3 선별 · 재활용 단계

□ 선별시설 확충 및 선별품 품질개선

○ **(선별시설 확충)** 노후화된 **공공선별시설 신·증설**('21년, 30개소) 및 **투명페트병 별도 선별**을 위한 **시설 현대화***('21년, 17개소)

* 투명페트병 처리용 별도 선별 라인, 자동선별시설(광학선별기 등) 설치 등

연도		계	'19	'20	'21	'22	'23	'24	'25
신규시설 확충	계획	65	16	9	8	8	8	8	8
	실적	-	16	9	9	-	-	-	-

※ '21년 현재 전국 공공선별시설 개소수 : 187개소

○ **(선별품 품질개선)**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 선별시설별 **품질등급 기준**을 마련('20.11)하고, **선별지원금 차등화**('21~)

□ 국내 재활용산업 경쟁력 확보

○ **(공공수요 확대)** 투명페트병 **재활용 의류 시범구매 협약***('21.3), 재활용품을 공공기관 의무대상인 **혁신제품으로 지정**(~'21.11, 67개)

* 국방부 운동복 1만 벌, 경찰청 활동복·근무복 등 2천 벌 구매

재활용의류 구매 서약 (환경부-국방부-경찰청)	재활용의류 착용 (국방부-경찰청)	재활용 의류 전시회
		

○ **(재활용 방법 확대)** 환경부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민관 TF팀 운영을('21.3~6) 통해 **열분해 활성화 방안*** **마련**('21.6)

* 원료 수급 및 열분해제품 용도 확대, 열분해 시설 확충 및 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등

※ 규제샌드 박스를 활용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·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허가('21.9, SK지오센트릭·GS칼텍스·현대오일뱅크)

○ **(산업 육성)** 재활용산업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

- **(클러스터)**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**전주기 지원**을 위해 주요 폐기물(부산 폐플라스틱, 포항 폐배터리) **연구·집적단지 조성**('21~'23)

- **(R&D)**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폐플라스틱·폐비닐 등 회수·선별, 물질·화학적 재활용, 재활용성 개선 등 **기술개발 지원**('20~'21, 222억원)

- **(공급 안정화)** 재활용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**시장관리센터를 신설**('21.1~)하고, 재생원료 **비축창고*** **구축**(4개소, 1.3만톤)

* '20년 정읍(3천톤) → '21년 안성·대구·청주(1만톤) → '22년 음성(1만톤) → ('23년) 양주
※ '20.3~12월까지 폐지 21천톤, PET 9천톤 등 재활용가능자원 35.6천톤 비축

○ **(폐기물 수입)** 폐기물 적체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국내 대체가 가능한 **주요 폐기물 수입금지 로드맵** 확정('21.1)

- 불법 수출입 원천 차단을 위해 **수출입안전관리센터를 신설**하고('21.4), **보증보험 의무화 및 징벌적 과징금**(부적정 수익의 3배 이내) 도입('21.7)

< 폐기물 수입금지 로드맵 주요내용 >

분 류	품 목	수입 금지·제한 계획
범주Ⅰ (수입 금지)	1 **폐플라스틱**	○ '22.1월부터 수입 금지
	2 **폐섬유**	○ '22.1월부터 수입 금지
	3 석탄재	○ '23.1월부터 수입 금지
	4 폐타이어	○ '23.1월부터 수입 금지
	폐지(혼합폐지)	('22.1월부터 수입 금지)
범주Ⅱ (품질기준 강화)	1 폐지(폐골판지)	○ '23.1월부터 품질기준 미충족 時 수입 제한
	2 오니	
	3 분진	
범주Ⅲ (검사 강화)	1 폐배터리	○ 수입은 허용 ○ 부적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기준 및 통관 前 검사 강화
	2 폐금속	
	3 폐전기전자제품	

* '30년에는 **폐금속류 외에는 원칙적 수입금지 또는 제한**

4 처리 단계

□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확립

○ **(발생지 처리)**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**발생한 지역**(시·군·구)**에서 처리**하도록 **폐기물관리법 개정** 추진('21.4~, 국회 계류중)

※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율('18년) : 시·도 평균 87.3%, 시·군·구 평균 55.7%

- 발생지 외에서 처리할 경우 **반입협력금**(주민지원, 시설확충 등 용도 제한)을 부과하여 처리시설 인근 주민의 **환경상 불이익 최소화**

○ **(처리시설 의무화)** 일정 규모(30만m^2) 이상 **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**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**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**('20.12)

※ 기존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일정금액 납부 방식으로 대체 가능

□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

○ **(직매립 금지)** 생활폐기물을 선별, 소각 등을 거친 후 **잔재물만 매립**하도록 **직매립 금지 규정*** 신설('21.7, 폐기물관리법령 개정)

* 수도권은 '26년, 그 외 지역은 '30년부터 시행

※ '20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(300만톤) 중 25%가 직매립 생활폐기물(75만톤)

○ **(전처리·소각시설 확충)** 직매립 금지 시행에 앞서 **시·도별 전처리·소각시설 확충계획*** **등** 세부이행 로드맵 마련('21.12)

* (서울) 광역자원회수시설(소각시설) 건립, (인천)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(2개) 및 현대화(2개), (경기) 소각시설 신·증설(9개), 선별시설 신·증설(12개)

○ **(부담금 교부율)** 시도별 소각·매립량 증감에 따라 **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**('22.3~, 70% → 50 ~ 90%)

□ **환경·주민친화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**

○ **(공공처리시설) 재난·불법폐기물 신속 처리**를 위해 국가 **공공폐자원처리시설 설치근거 마련**('20.6,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제정)

※ 최근 2년간 투기·방치폐기물 161만톤(134만톤 처리), 수해·지진·재난 폐기물 22만톤/년

- **(주요내용)** ①지역주민 감시, ②인근 주민 **투자 및 운영이익 공유**, ③주민복지 지원을 위한 **특별기금 조성** 등

○ **(주민지원 확대)**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**인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**에 기여

- ①소각폐열 등을 **주민 소득 사업과 연계**하여 지원하는 **친환경 에너지타운* 조성** 확대('20~'21, 5개소 추진)

* 소각폐열 등을 활용하여 유리 온실, 야영장, 찜질방 등에 온수·온열 공급

< 주요 준공사업 현황('20년) >

지자체	총사업비	주요 지원내용
강원 홍천군	63억원	■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가스 생산·판매 ■ 하수슬러지로 퇴비 생산·판매
충북 청주시	52억원	■ 바이오가스 발전 폐열로 농산물 건조장, 마을난방 및 온수공급
충남 아산시	52억원	■ 소각폐열을 세탁업소(마을기업)에 공급 ■ 바이오가스 발전 폐열을 유리온실 공급
경남 양산시	48억원	■ 바이오가스 발전 폐열을 유리온실에 공급 ■ 족욕장 및 주말농장 운영
경북 영천시	52억원	■ 농산물 저장고, 집하장 운영

- ②지자체장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그 인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**주민 편익시설 설치비용 상한액 인상**('20.12)

※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% 이내(주민대표 등과 협의) → 20% 이내

Ⅴ. 평가 및 향후계획

1 평 가

□ 이행과제에 대한 점검 결과 **모든 과제가 적정 추진 중**

□ 폐기물 부문에 한정하지 않고, **생산-유통-소비 전과정**에서 자원을 효율적 이용 및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**순환경제 체계 구축 필요**

○ 자원순환 전반의 **정부 시책을 추가 발굴**하고,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**법적 체계 요구**

※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('20.12)의 10대 중점 과제로 '순환경제 활성화'가 채택

○ 현재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,「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」 국회 계류 중('21.6~)

- **(순환경제법)** (생산)**재생원료 사용** 의무화, (유통)**포장재 감량** 및 재사용, (소비)소비자의 **수리할 권리** 보장, (폐기)**순환자원 인정** 확대 등

- **(유기성폐자원법)** 지자체 등 대규모 배출자·처리자에 대한 유기성 폐자원의 **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**, 미달성시 부담금 부과 등

2 향후계획

□ 주기적으로 이행과제별 **추진상황 점검 및 법·제도적 기반 구축**

□ 생산단계 **폐기물 발생 감량**, 신기술 적용 및 **규제 부담해소**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제도 활성화 등 **재활용 촉진 제도개선** 지속 추진

붙임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

분야		주요과제	진행단계	평가
발생	생산	▪ 제2차 순환이용성 평가계획('21~'23) 수립	계획수립 완료	달성
		▪ 제품별 순환이용성 평가 및 개선권고	매년 개선권고 중	달성
		▪ 사업장폐기물 감축 컨설팅, 설비 지원	매년 지원 중	달성
		▪ 사업장폐기물 감량목표 등 관리 강화(자원순환기본법 개정)	법령 개정중	정상
	유통	▪ 다회용 포장재 사용 시범사업	추진 완료	달성
		▪ 택배 등 포장기준 법제화(시행규칙 개정)	법령 개정중	정상
		▪ 포장재 사전 평가 및 신고제 도입(자원재활용법 개정)	법령 개정중	정상
	소비	▪ 플라스틱 빨대 등 관리대상 확대	시행령 개정완료	달성
		▪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('22.6월 시행예정)	법령개정 완료	정상
배출·수거	분리배출	▪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(공동주택 '21, 단독주택 '22)	단독주택 시행예정	정상
		▪ 품목별 요일제 등 분리배출 지침 개정·시행	지침개정 완료	달성
		▪ 화장품용기 등 역회수 체계 구축	관련고시 정비	정상
	공공수거	▪ 공공 책임수거 전환 착수(폐기물관리법 개정)	법령 개정중	정상
		▪ 수거단가 가격연동제 의무화	법령 개정중	정상
		▪ 공공 책임수거 시행(기존 계약물량 고려 단계적 적용)	법령 개정중	정상

재활용	선별	■ 선별품 품질등급제 확대 적용	차등지원금 지급중	● 달성
		■ 선별시설 설치·운영기준 강화(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)	설치·운영기준 검토중	● 정상
	수요처	■ 공공부문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제 도입(재활용법 개정)	법령 개정중	● 정상
		■ 재생원료 인센티브(재활용법 개정) 및 장기 사용목표 도입	법령 개정중	● 정상
	산업	■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	기본계획 수립	● 달성
		■ 폐기물 수입금지·제한 로드맵 마련	로드맵 완료	● 달성
처리	발생지	■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도입(폐기물관리법 개정)	법령 개정중	● 정상
		■ 타지역 폐기물 처리 페널티 및 보상제 도입	법령 개정중	● 정상
	직매립	■ '30년 직매립 금지 법제화(폐기물관리법 개정)	시행규칙 개정	● 달성
		■ 시·도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(수도권 旣 수립)	용역 추진중	● 정상
	시설	■ 권역별 공공 처리시설 확충(특별법 시행, 후보지 선정)	법령 제정	● 정상
		■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시범사업 추진	시범사업 추진 중	● 정상
이행점검		■ 지자체 폐기물 처리역량 평가제 도입(폐기물관리법 개정)	평가기준 마련 (법 개정 예정)	● 정상
		■ 생활폐기물 종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	ISP수립	● 정상